

대통령령 제 호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
일부개정령안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11 중 “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”를 “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사업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11(공급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)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의 적정 수준을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(補填)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<u>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	제18조의11(공급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) ----- ----- ----- -----, <u>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 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부 칙	부 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